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생각 생각 시간 사람이 신뢰를!				
보도 일시	2024. 9. 10.(화) 06:00	배포일	2024. 9. 9.(월)	
담당 부서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담당자	김가영 팀장(043-880-5821) 박현지 대리(043-880-5825)	

# 의약품, 개인 간 거래는 절대 하지 말아야

-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허용기준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

최근 소비자가 사용하던 물품이나 필요하지 않은 제품 등을 판매하는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의약품까지도 중고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 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주요 C2C 플랫폼과 커뮤니티\*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현황을 조사(2024.6월~7월)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71건 확인됐다.

\* 중고거래 플랫폼(당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가나다순)),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카페) 등 게시글 기준

#### 【 관련 법·기준 】

- (의약품)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임.
- (해외 식품)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 식품 등은 판매할 수 없음.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sup>\*</sup>만 판매 가능함.
  - \* 단, 시범사업 시행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건강기능식품은 개인도 판매할 수 있음.

## □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까지 거래되고 있어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 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사례(67건)가 확인됐고, 이 중비만치료 주사제와 같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15건에 달했다.

# □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식품 판매도 210건 확인

해외 식품은 수입·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정식 수입신고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식품 등도 210건 확인되어 유통을 차단했다.

## □ 시범사업 허용기준을 벗어난 건강기능식품 거래 사례도 있어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상 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2곳에서 일정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다.

####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주요내용 ]

- **(기간)** '24.5.8. ~ '25.5.7.
- (플랫폼) 당근, 번개장터
- (거래요건) <sup>③</sup>미개봉, <sup>②</sup>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사항 확인 가능, <sup>③</sup>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sup>④</sup>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sup>⑤</sup>연간 판매 10건·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이 적용되지 않은 플랫폼(세컨웨어, 중고나라)과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124건이었고,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2개의 플랫폼에서도 기준에 벗어난 거래가 게시글 중에서 170건이 확인되어 즉시 유통을 차단했다.

## □ 안전한 개인 간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자, 소비자 모두 노력할 필요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플랫폼과 커뮤니티 운영자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개인 모두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물품을 유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모니터링에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요청했고, 플랫폼은 일부 부적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추가 점검에서 571건의 불법 및 부적합 거래가 확인된바, 사업자의 차단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준법 의지와 이행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할 것, ▲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개인 간 건강 기능식품 거래 시 정부의 지침(시범사업 허용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개인 간 식·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주요 모니터링 결과

### 개인 간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거래 모니터링

- (내용) 개인 간 의약품 등 불법 거래 및 요건에 부적합한 건강기능식품 거래 실태
- (대상) 중고거래 플랫폼 4곳\*,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 등
  - \* 당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플랫폼명 가나다순)
  - \*\* 네이버 카페
- (방법) 온라인 게시글 모니터링, 직접 구매 등
- (결과) 의약품 67건, 건강기능식품 294건 등 불법 및 부적합 거래 571건 확인

(단위: 건. %)

구분	거래 불가	요건 부적합	계 (비율)
<b>의약품</b> 67		-	67 (11.7)
건강기능식품	124	170	294 (51.5)
<b>기타(미신고 해외 식품)</b> 210		-	210 (36.8)
계	401 (70.2)	170 (29.8)	571 (100.0)

## 가. 개인 간 의약품 불법 거래 실태

- □ (의약품) C2C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거래가 67건 확인됨.
  - (의약품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거래가 15건(22.4%),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42건(62.7%), 그 외 한의원 등을 통해 처방·조제받은 '한약'도 10건(14.9%) 확인됨.

(단위: 건, %)

구분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한약	계
건수 (비율)	15 (22.4)	42 (62.7)	10 (14.9)	67 (100.0)

(거래현황별)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된 사례가 25건(37.3%), '중고나라' 17건
 (25.4%), '당근' 13건(19.4%) 등으로 나타남.

(단위: 건, %)

구분	네이버 카페	당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계
건수 (비율)	25 (37.3)	13 (19.4)	11 (16.4)	1 (1.5)	17 (25.4)	67 (100.0)

※ 플랫폼(사업자)명 가나다순

### 나.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실태

- □ (거래 불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에서 제외되어 거래 조건과 관계없이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한 C2C 플랫폼(세컨웨어, 중고나라) 및 커뮤니티 에서 124건 확인됨.
- □ (요건 부적합) 시범사업에 참여한 C2C 플랫폼(당근, 번개장터)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중 세부 거래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전용 카테고리를 포함한 전체 게시글에서 170건 확인됨.
  - (위반내용별) 해당 거래의 위반 내용(복수집계)을 살펴본 결과, '개봉' 91건
    (53.5%), '소비기한 임박' 44건(25.9%) 등의 순으로 많았음.

(단위: 건, %)

구분	개봉	소비기한 임박1)	표시사항 확인 불기 <sup>2)</sup>	냉장·냉동보관 <sup>3)</sup>	판매량 과다 <sup>4)</sup>
건수 (비율)	91 (53.5)	44 (25.9)	34 (20.0)	7 (4.1)	1 (0.6)

- 1) 소비기한(유통기한)이 6개월 미만인 제품
- 2) 건강기능식품 도안,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게시글 기준)
- 3) 냉장 또는 냉동보관이 필요한 제품
- 4) 판매 건수 10회 또는 누적 금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게시글 기준)

## 다. 기타

- □ (미신고 해외 식품)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해외 식품 등을 C2C 플랫폼 및 커뮤니티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210건 확인됨.
  - \* 수입·판매업자가 판매 등의 목적으로 수입신고 하는 제품은 제품명, 소비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스티커, 라벨 등)해야 함. 이에 한글 표시사항 포함 여부, 게시글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함.

# 붙임 2

# 법·기준 위반 거래 주요 사례

# □ 의약품



## □ 건강기능식품



# □ 해외 식품



# 붙임 3

# 관련 법·기준

### □ 의약품

ㅇ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임.

####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50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건강기능식품

ㅇ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가능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ㅇ 단, 시범사업 시행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제품은 개인도 판매할 수 있음.

####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주요내용 】

- **(기간)** '24.5.8. ~ '25.5.7.
- **(플랫폼)** 당근, 번개장터
- (거래요건) <sup>③</sup>미개봉, <sup>②</sup>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사항 확인 가능, <sup>③</sup>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sup>④</sup>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sup>⑤</sup>연간 판매 10회·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

## □ 해외 식품

ㅇ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 식품 등은 판매할 수 없음.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① 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 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붙임 4

## 소비자 주의사항

### 품목별 개인 간 거래 가능 플랫폼

구분	당근, 번개장터 그 외		
의약품	불가 (X)		
건강기능식품	시범 허용 (O)	불가 (X)	
미신고 해외 식품	불기	F (X)	

#### 구매 시 주의사항

#### ■ 의약품

-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또는 약사의 조제·복약지도 등을 받고 약국에서 구매합니다.
-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안전상비약품은 편의점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 건강기능식품

- 개인 간 거래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기능 성분의 변질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구매해야 합니다.

#### ■ 해외 식품

- 개인이 판매하는 미신고 해외 식품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약품 성분 및 식품 부적합원료 등 위해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할 경우, '소비자24' 누리집 등에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통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판매 시 주의사항

#### ■ 의약품

-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무료 나눔(수여)도 판매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폐의약품은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시설 및 지정 약국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 버립니다.

#### ■ 건강기능식품

- 한시적('24.5.8. ~ '25.5.7.)으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중고거래 플랫폼은 당근과 번개장터이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당근 또는 번개장터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개봉 여부 및 소비기한 등을 확인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 해외 식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 식품 등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150달러 이하로서 자가 사용 목적으로 정식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세받은 제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